

하고 지역 언론에 보도하기로 하였다. 6월 11일 교육운동단체에서 도교육위원회에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측의 무성의에 항의하였다.

그러자 학교장이 피해자 부모 집으로 찾아와 사과하였고 이에 마음이 흔들린 피해자 어머니는 언론보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 회는 이미 보도 자료를 다 보냈고 학교장의 사과는 이러한 피해자 측의 움직임이 여론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거듭 설득했으나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멈추고 싶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간청에 지역 언론사에 보도중지 요청을 하였다.

가해자는 법정 구속되었으며 피해자 아버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뜻을 비추었다. 가해자측의 집요한 합의 요구가 있었으나 양측의 합의조건이 너무 달라 이뤄지지 못하는 사이 가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본 회는 피해어린이의 심리적 상처극복을 돋기 위해 성폭력피해자치료보호비가 지원됨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순천향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부모가 가해자와 학교책임자 그리고 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4) 성과와 의미

우리 사회에서 남자 어린이 성폭력은 매우 드문 일이고 있을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과 성폭력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교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법의 현실적인 적용이라는 미명하에 가해자가 석방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었다.

성폭력은 단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의 문제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

23. 초대 교수 제자 강간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이미나(가명) - 초대 대학생, 23세
- 가해자 : 이경달(가명) - 초대 교수, 30대 후반, 이혼 후 독신

2) 사건내용

피해자 이미나씨는 2003년 6월 5일에 가해자인 같은 학과 교수와 학과 학생들과 함께 약간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같이 갔는데, 가해자인 이교수가 갑자기 울면서 노래방을 나갔다. 같이 있던 학생들이 모두 이교수를 걱정하던 참에 이씨는 이교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오라는 이교수의 전화 연락을 받고 단순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갔다. 이교수가 약속한 곳에 없어 기다리던 중에 다시 연락이 와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오라는 말을 듣고, 약간 주저하기는 했지만, 이교수가 울면서 노래방을 나갔던 게 걱정이 되어 그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이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

이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씨는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학교 학장을 찾아가 얘기하고 이교수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했다. 그러나 이교수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씨의 부모님을 찾아가 마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신이 학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등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 또한 이교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에 이미 또 다른 학생 차씨를 강간했는데, 이씨는 이 사실을 알고 차씨와 함께 이교수한테 대응하기로 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 (2003. 6월 ~ 현재)

2003년 6월 9일 이씨와 또 다른 피해자 차씨, 그리고 이들의 선배가 천안여성의전화(이하 본회)를 찾아와 면접상담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 경찰에 고소하기로 하고 가해자인 이교수를 충남경찰서 여성기동대에 고소하였다. 본 회는 증거물 채취를 위해 피해자들을 병원에 보내 질에서 샘플을 2개 채취했다. 이것을 고소할 때 같이 제출하였는데, 병원에서 샘플 1개를 검사한 결과는 정자반응이 없어서 나머지 샘플을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정액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사건 당일로부터 너무 시일이 많이 지나 혈액형은 판독이 어려워, 이렇게 혈액형 판독이 어려운 경우는 0형이라고 기재한다고 국과수가 소견서를 첨부해서 검찰로 넘겼다.

이를 받아들여 검찰은 가해자인 이교수를 강간 혐의로 기소하였다. 교수를 기소하기 전에 또 다른 피해자 차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이것은 가해자인 이교수가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차씨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가해 교수는 대전지법 검찰청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 사건을 가해 교수와 피해자 이씨, 그리고 차씨 간의 삼각관

계로 몰고 가 무죄를 주장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무고의 혐의가 있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본 회에서는 여성의전화 전국 지부에 이 사건을 알리고, 반성하지 않고 변호사를 5명씩이나 선임하여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는 가해 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여성의전화 전국 지부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여성단체, 천안지역 여성단체와 상담소 등에서 총 606명의 서명을 받아 담당 재판부에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또한 대전지법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였고, 재판을 방청하였다.

1차 공판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피해자 질에서 채취한 샘플 중 한 개는 정자반응이 없고 다른 하나는 정액반응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이것은 상담소와 피해자가 짜고서 가해 교수를 음해하려고 꾸민 이야기라는 식으로 변론을 했다. 이에 본회는 만일을 대비해 첫 번째 샘플에서 증거가 안나올 경우, 나머지 샘플에서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샘플을 두 개 채취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진정서를 재판부 앞으로 제출했다.

9월 17일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비공개 증언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침착하게 진술했고, 가해자 측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차씨와 피해자, 본회 상담원 간의 대화를 녹음한 CD가 거짓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 CD에는 피해자 차씨가 고소를 취하한 후에 우연히 본회 상담원과 만나게 되어 3명이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왜 차씨가 고소를 취소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녹음되었고, 이것을 녹취록으로 정리하여 CD와 함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던 것이다. 재판장은 CD가 편집되었다는 정밀검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10월 2일 3차 공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인인 차씨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차 공판 때 참석하지 않아 3차 공판 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었다. 본 회에서는 차씨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해 차씨가 증인을 서도록 차씨의 주변사람들을 통해 설득하였다.

마침내 3차 공판에 차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비교적 사실대로 증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되었으며, 검사는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앞으로 10월 15일 4차 공판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4) 성과와 의미

본 회는 이 사건을 대학 측에 알리고 면담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으나 대학 측은 불응하였다. 대체로 신설대학이자 도립대학으로 총학생회

마저 자기네 학과가 없어질까봐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을 도와주지 않았다. 학생들은 대학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대학에 대한 평이 나빠질 것을 우려에 동료학생의 피해를 외면하였다.

24. 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1) 인적사항

- 피해자 : 김씨 - 교사(43세, 기혼)
- 가해자 : 안씨 - 교장(60세, 기혼)

2) 사건내용

김교사는 발령 초부터 결재 과정처럼 곤란한 상황일 때 교장이 등을 쓸어내리거나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으며, 자주 교실에 들러 얼굴을 만지는 등 계속되는 접촉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동료 여교사나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지만 “교장선생님이 너한테 관심이 많은가 보다” 하는 정도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만 하는 상태였다.

2001년 4월 30일 특수학급 담당교사인 김교사가 교실에서 시험지 채점을 하고 있는데 교장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와 머리를 휘어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김교사가 반항하자 교장은 순간 운동복 차림이었던 김교사의 바지를 끌어내렸고 김교사는 속옷이 벗겨지는 것을 막으려 불잡고 강하게 저항을 했다. 이 과정에서 머리가 형틀어지고 얼굴이 온통 립스틱으로 범벅되었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찍어 누르며 발로 차서 땅이 들고 정강이와 무릎 등은 까지고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 후 진단서 발부받았다.

다음날 여교사회 회장인 동료 교사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말했으며 교장에게 진단서를 보이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경우 문제 삼겠다고 하였다.

5월 3일 김포교육청 교육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소문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비밀로 하고 교장을 혼내주는 정도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교사는 자신도 무엇인가 잘못한 것으로 알려 질까봐 두려웠으며 보통의 성폭력 사건에서 있듯이 김교사가 자신의 남편과 가정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자 오히려 교장이 암묵적으로 압력을 가해왔고 따라서 김교사는 비굴해 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 자신의 소신으로 뇌물을 건넨 적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교장은 권한을 이용하여 교사들 간에 김교사를 따돌림 당하게 만들었다. 2002년 봄 방학 기간에 학교 기물인 노트북 컴퓨터의 분실 사건이 일어나자 교장은 공개적으로 김교사를 지목하였다.

현재 김교사는 분실 사건 등에 대하여는 교장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신청하였고, 명예훼손 사건 중 교육청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하여 교장이 1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겠다고 하였다.

성폭력 사건 이후 계속되는 불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컴퓨터와 직인 분실 사건, 인터넷 게시물 등의 범인으로 공개적인 지적을 받으므로 끝내 김교사는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신경계 질환’으로 57일간 입원치료를 하고 입원 중 실명의 위기와 하반시 마비까지 오게 되었다. 현재는 하반신 마비 상태를 상당부분 극복하였으나 얼마 전 까지 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이번 사건을 겪어야 했다.

경기도 교육청 단독의 형식적인 재조사 이후 불공정한 전근 발령은 취소되었으나 사건의 내용을 오해한 학부모들은 등교거부를 하면서 김교사의 전근을 요청하였다. 출근을 강행한 김교사는 심한 욕설을 듣고 교실에 감금되는 사태까지 당했다. 김교사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김교사는 타지로 전근되었고, 현재 파견 근무는 마치고 학교 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거리 근무지 상황과 남편을 비롯한 가족과의 문제가 심각해져 별거 상태에 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진행과정(2002. 7. ~ 12.)

2002년 7월 15일부터 각 단체들은 지역 내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알게 되었고 전교조 김포지회 임원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게 되었다.

김포여성의전화(이하 본 회)는 김포여성민우회와 함께 김교사와 안교장을 1차 면담했으며 19일에 열린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분위기를 파악한 후 22일 3개 단체가 주축이 된 공동조사단 구성하였다. 공동대책위원회가 아닌 공동조사 단을 구성한 이유는 보통의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정성 시비와 관련해서 너무 시일이 오래 경과된 것과 진단서가 있기는 하나 폭행에 의한 것을 증

명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김교사가 평소 교사나 학부모, 지역인사들로부터 권리과 밀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 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일관된 주장에 의해 피해사실이 상당부분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학부모, 지역 여론 등의 분위기가 불리한 상황에서 무조건 여성단체 또는 교사 권리단체가 여성을 편들어 주고 있다는 오해를 사는 것은 공동조사단의 공정성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청의 재조사를 이끌어내고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증거물을 객관화하여 진실을 규명하기로 하였다. 선부른 대책논의 주장보다는 진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포교육청은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를 사전 접촉하여 납득할 수 없는 소견서를 받았으며, 조사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면담요청서를 폐기한 것을 비롯하여, 교육장이 결재한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감사결과를 통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탈법과 은폐조작 의혹을 낳았다.

교장은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정신지체장애아동의 인권을 짓밟는 발언도 거침없이 거듭하였고 사건발생 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엇갈린 주장을 하였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교육청이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재조사에 나서기는 했으나 자문위원의 의견은 전혀 의사결정에 반영될 구속력이 없었으며 조사에 임하는 조사자들의 석연치 않은 자세는 재조사는 형식에 불과한 절차라는 인상을 주었다.

결국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김포교육청과 교육장, 교장의 탈법 사실에 대한 경찰조사를 요청했으며 상당부분 업무태만 또는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정되는 사실들이 밝혀졌다. 그러나 형사상 사법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에 경고조치를 권유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4) 성과와 의미

보통의 성폭력에서도 그러하듯이 피해당사자가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했던 일이 가해혐의자 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권리과의 밀착 의혹을 사는 등 악재로 작용하였다.

교육기관의 해묵은 악습으로 인하여 탈법 행위들이 거듭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축소, 은폐, 조작되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 갔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절대적

으로 불리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와 공정한 조처를 위하여 현행 '학교 내 성희롱 전담반 구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서와 시행의지가 시정되어 하겠다.

사회전반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전환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기관의 보수 지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분위에서는 피해주장자의 의사가 왜곡되고 학생들을 담보로 한 여론 물이식의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단이 사건의 초동단계에서부터 접근해 나갈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겠다.

25. 학교 성교육을 통해 드러난 학교성폭력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ㄱ초교 5 ~ 6학년 다수
- 가해자 : ㄱ초교 교무주임, 50대

2) 사건내용

인천여성의전화(이하 본회) 상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공중전화로 거는 듯 시끄럽고 산만한 분위기가 전해져왔지만 아이들의 용건은 분명했다.

"우리들이 당한 것이 성폭력인 것 같은데 학교에 말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럼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의논하여 전화할게요."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짧게 확인한 아이들은 다른 설명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본회는 아이들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 걱정이 되었으나 초조하게 아이들의 전화가 다시 걸려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루만에 다시 전화를 해온 아이들은 자신들이 ㄱ초교 6학년이라는 것을 밝히고, 며칠 전 본 회에서 실시한 성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당한 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밝히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진행과정(1999. 7. 15. ~ 2000. 3.)

우선 본 회는 ㄱ초교 교장 앞으로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아이들이 상담해왔으니 교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다음날 교감이 본 회를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교장이 내년에 정년퇴임인데 이 일로 오점을 남길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본 회는 교장이 책임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한다면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본 회가 제시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과 증거확보를 위해 교무주임에게는 당분간 사건발생을 알리지 말 것. 5 ~ 6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다시한번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익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게 해줄 것. 사실이 확인되면 교무주임을 파면할 것.

설문조사의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7 ~ 80 %가 교무주임의 성희롱, 성추행 사실(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거나 등)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었고, 상황은 적어도 1년 이상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설문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표현으로 분노를 표시하였고 처벌을 원하였다. 또한 자신이나 친구가 당한 성희롱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그중에서 정도가 심한 학생이 서너명으로 보통 1주일에 1회, 방과 후 미술실에 불러 무릎에 앉힌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볼에 뾰뽀를 하거나 하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학생은 엄마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고 여러 번 말했으나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본 회는 설문결과를 정리하여 학교로 가서 교장과 교감을 면담하였다. 두 사람도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교장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였다. 교장은 그 자리에서 교무주임을 불러 사실을 밝혔다. 교무주임은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나중에는 예뻐서 그랬다며 절대로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몇차례의 추가면담을 통해 본 회는 교무주임이 조회 등의 공개석상에서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 담임과 수업을 즉시 해제할 것, 교무주임을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장은 앞의 두 조항은 즉시 실행하였으나, 파면을 하려면 교육청에 파면사유를 올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오고 결국 공개되어 자신은 징계를 받게 되니 전근조치하자고 사정하였다. 본 회는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교장의 협조를 끌어낸 것이므로 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교무주임이 타학교에 가서도 다시 그럴 소지가 있으므로 그 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주도록 요청하였다. 교장은 이를 받아들여 교무주임을 교사관리를 해달라는 단서를 붙여 비정기전보내신으로 전근조치하고 사건은 해결되었다.

해결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나 학교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들도 해결과 예방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4) 성과와 의미

학교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 한 점은 이 사건이 가진 의미의 핵심이며 체계적인 학교성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주요한 지점이다.

학교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교장이 책임져야 하므로 교장들은 성폭력 사실을 덮어두고 무마하려고 하며, 가해교사의 편을 들게 된다. 본 회는 이런 한계를 고려하여 교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도와주었다.

26. 표여자종합고등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표여종고 여학생 8명
- 가해자 - 표여종고 체육교사

2) 사건내용

1987년 7월 표여종고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족벌 체제와 영리위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평교사들은 오랫동안 재단의 비리와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학교운영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들의 불만은 교사 2명의 강제 해직을 계기로 7월 1일 전교생이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며 학내 시위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학교 측의 무자비한 폭력 대응에도 학생들은 요구 사항을 내걸며 시위를 계속했고 농성과정에서 여학생 8명이 체육 교사에게 강간 당했던 사실이 폭로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

학생들이 학내 민주화요구 투쟁을 하는 중에 피해 여학생들이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였고 1987년 7월 10일 고려대 사범대생 3명이 한국여성의전화(이하 본회)에 이 사건을 알렸다. 이에 본 회는 여성사회연구회 그리고 인권단체 및 사회단체가 합세하여 ‘파주여종고사태공대위’를 결성하였고 학생들도 성폭력 교사를 포함해 폭력 교사를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육부의 기만적 행동, 사복경찰과 전경들의 폭력을 경험했다.

공대위는 ‘파주여종고 학생에 대한 각목 폭행과 성폭행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학생들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재단 측 비호와 경찰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 교육부 장관 면담요구 시위, 철야농성을 감행했고 공대위는 지원 농성을 하였다. 학생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이사장, 교장, 폭력 교직원 6명을 퇴진시켰고 학생대표 직선제 선출을 생취했다. 학생들은 8월 19일에, 공대위는 8월 20일에 농성을 풀었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의 성폭력이 처음 폭로되었고 여성단체가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비리와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으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그런데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부분보다는 ‘학내 비리’가 더 크게 부각되었으며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 문제가 아닌 학내 비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즉 여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사건을 교육현장의 타락, 반민주적 비인간적 여성교육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보았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자녀와 형제들이 참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폭로한 여학생들은 ‘성을 통한 여성억압 철폐’의 초석이 아닌 ‘교육의 민주화와 인간적 사회,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는 데 초석’이 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이 ‘여성’의 문제가 아닌 제도 교육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장애여성 성폭력

27.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의한 경계선 정신지체여성 성폭력 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박미자(가명) - 30세, 경계선 장애와 신체 지체 1급의 장애여성
- 加害者 : 임철수(가명) - 23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2) 사건 내용

경계선 장애와 신체 지체1급의 장애 여성이 집 앞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갔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사건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임철수가 우유를 사러 온 박미자씨를 보고 “집을 나왔느냐”고 물어 보자 박씨는 “집은 안 나왔는데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왔다”고 하였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밤 11시 경 임씨는 박씨에게 “밤이 늦었으니 여관을 잡아주겠다”하여 임씨는 여관으로 따라 갔다.

여관으로 들어가자 임철수는 방문을 잠궜다. 박씨가 화장실을 갔다 와 보니 임철수는 이미 옷을 벗고 있었다. 박씨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고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다. 임철수는 박씨의 옷을 벗기고는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 박씨를 침대에 눕히고 박씨의 양 손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박씨가 고통스러워 하자 임철수는 “처음 하냐”고 물었고 “난 여자친구와 해 봤다”고 하며, 저항하는 박씨의 뺨을 3대 때렸다. 박씨는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단지 가해자의 손이 아주 크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다.

박씨는 엄마한테 혼날까 걱정도 되고 성기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서 여관에서 혼자 자고 새벽에 나와서 교회로 갔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서 목사님이 안양여성의전화(이하 본 회)로 연계하여 주었다.

사건 이후 박씨는 성기가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박씨의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딸이 성폭력을 당해 너무 속상하고 가해자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나 따라간 딸에게도 잘못이 있는 듯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었다. 박씨는 “나를 죽인다고 했다” 등 공포감을 나타내면서도 “혼내줘야 한다” “다른 사람한테도 또 할 거다”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30세의 신체지체 1급 장애여성으로 중 1때 뇌 손상으로 인해 전신마비가 왔고 10여년의 재활훈련으로 신체지체를 극복하여 현재는 혼자 걸어 다닐 수는 있는 정도가 되었으나 뇌손상 후유증으로 정신지체까지 겹쳐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1. 10. ~ 2002. 10.)

10월 23일, 피해자가 계속 성기의 통증을 호소하여 산부인과에서 성기 파열과 성병관련 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상처는 없었다. 24일에는 경찰이 본 회 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원 배석 하에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이후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의 ‘정신지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 소견 첨부’를 요청하였다. 신경정신과 연계를 하여 심리검사를 해보니 IQ 70으로 정신지체기준의 경계선에 있고 심한 우울증과 상황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소견을 받았다.

2002년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차례 결친 재판 진행이 되었다. 피해자와 목사가 증인으로 출두하였고 상담원도 배석하였다. 본 회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방청하였다. 1심에서 가해자는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후 피해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치료 및 보호를 받았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은 장애를 가진 내담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닌 그 장애여성을 책임지는 또 다른 여성의 문제(내담자의 심한 우울증과 오랜 투병생활로 지쳐 버린 어머니)까지 내포되어 있는 복합적인 사건이었다.

본 회의 다양한 연계망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피해자에게 다양한 후속지원을 할 수 있었으며,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성폭력사건에서의 핵심 관점인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를 재판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서 가해자의 단호한 처벌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 가족을 혼자 책임져 온 어머니가 딸에 대한 불안감과 지나친 집착, 간섭으로 딸의 재활훈련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역할 훈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지 못해 아쉽다.

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 문제를 개별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고, 재활, 취업 등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8. 보호가정에서 벌어진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권수연(가명) - 37세, 정신지체 2급의 장애여성
- 가해자 : 임영호(가명) - 40세 후반, 판매직
- 민숙자(가명) - 임영호의 아내

2) 사건내용

정신지체 2급 장애여성인 권수연씨는 부산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18세까지 살았다. 그 이후 시설에서 자원봉사로 기억법을 가르쳤던 민숙자씨 집에서 지내다가 합천으로 결혼하여 두 자녀(8, 6세)를 두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민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을 하고 2000년도에 민씨 집으로 와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민씨의 가족으로는 남편 임영호씨와 그의 딸(당시 초등 2년)이 있었다. 피해자 권씨는 그 곳에서 모두 세 차례의 성폭력을 당하였다. 첫 번째는 2000년 3월 경 민씨의 남편 임영호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 온 가족이 한 방에서 함께 자고 있을 때 권씨의 바지를 벗기고 조용히 하라는 손짓과 함께 5~10분간 폭력을 행사했다. 그 다음 날 권씨가 이 사실을 민씨에게 말하자 권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다음 해 8월 초 민씨의 친척들이 놀러왔다가 돌아간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가 잠든 방으로 들어와 반바지를 벗기고 수건으로 입을 여러 차례 막으면서 성폭력을 하였다. 그 당시 강제로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권씨는 다리가 너무 아파 울면서 민씨에게로 갔고 민씨는 권씨의 이야기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 정액이 흘러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휴지로 닦아내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피해가 있고 난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다. 주방에서 민씨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가해자인 임씨가 어깨를 주무르라고 하였다. 권씨가 가해자의 어깨를 주무르자 임씨는 권씨의 가슴을 만지고 웃옷을 올려 유방을 빼고 깨물었다. 민씨가 점심을 먹으라고 하자 임시는 황급히 방에서 나갔고 이 사실을 역시 민씨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세 차례의 폭력을 당하고 난 피해자 권씨는 2001년 8월 초 보육시설에서 함께 자라왔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즈씨(피해자보다 연장자로 언니라고 부름)에게 전화를 하여 임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이를 후인 8월 6일 즈씨는 그의 직장 동료인 스씨와 함께 민씨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인 권씨를 데리고 나와 부산여성의전화(이하 본 회)에 내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요청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 과정 (2001. 8. ~ 2003. 10.)

면접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보호와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양지터에 입소시켜 보호하였다.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 여성 청소년계에 의뢰하여 여형사 3명이 출장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이혼 시 시댁에서 받았던 위자료 36만원 정도를 민씨가 모두 가져갔으며 한 달에 5000원씩 월급을 주면서 집안 일을 시켰고 밥도 따로 해 먹도록 했다고 분노를 표현하였다.

정신지체 장애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정신과에 진단을 의뢰하였다. 검사 결과 원래 지적 발달이 떨어져 있으며 미약한 수준의 정신지체 현상이 나타난다는 평가서를 받게 되었다.

민씨가 본 회로 찾아와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이므로 데려가야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지만 현재는 권씨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 이 곳에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여 돌려보냈다. 그 후 민씨는 본 회 뿐만이 아니라 시청, 구청의 시설 관계자와 인근 파출소에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을 부산여성의전화에서 감금하고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며 민원을 접수하여 본 회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파출소도 성폭력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가해자 측인 민씨의 민원도 들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여 경찰까지도 설득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피해자는 2001년 8월 14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 일시와 시각을 기억하기 어려웠으나 경찰은 친절하고 인내하는 자세로 근접한 피해 일시 및 시각을 추정해냈고, 본 회는

하루 종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곁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가해자인 임씨를 고소하고 법적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2번의 강간과 1번의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여러 차례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으므로 초기에는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으나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과 민씨 집에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어 분노하게 되었다. 피해자 권씨는 민씨가 독립심을 길러준다는 이유로 한 달에 5000원씩만 주면서 따로 밥을 지어먹도록 강요당했고 집안일과 민씨의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이 대변을 본 옷을 빨도록 했던 일들, 그리고 방을 닦을 때마다 100원씩 주며 청소를 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가해자 측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서의 조사가 이어졌다. 피해자는 검찰청에서의 진술과 두 번의 가해자와의 대질심문에서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본 회는 수사과정에 동행하여 권씨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왔던 다른 입소자들이 “피해자 권씨가 일상생활 중에 발작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친필로 기록한 진정서와 시설에서 발송하는 진정서를 담당 검사 앞으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법적인 지원 이외에도 가해자의 아내인 민씨가 그동안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을 주소지 동 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알아내어 민씨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장애인 복지카드, 그리고 지원금이 입금되는 통장과 도장을 되찾아 주었다. 민씨는 피해자의 신분증 및 복지카드 등을 돌려주면서 그동안 자신이 극진히 피해자 권씨를 돌보아주었고 교육과 운동을 시켜 피해자가 그의 자녀와 함께 살도록 준비를 해 주려고 했다는 장문의 편지를 내용 증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는 자신이 장애인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냈다고 판단된다.

2001년 8월에 시작된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공판을 거쳐 2002년 4월 2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민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는 본 회의 시설장이 고등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하였으

며 마침내 2003년 8월 14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가해자가 구속되었다. 민씨는 또다시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가해자의 아내인 민씨는 처음부터 피해자인 권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본 시설이 피해자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를 지원해 왔던 양지터의 시설장, 그리고 피해자를 상담소로 데리고 왔던 두 사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던 다른 한 사람을 위증으로 고소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인 장기보호시설로 연계되어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의 피해자 권씨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을 때 물적 증거는 없었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자신의 폭력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계속되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했던 것이 오랜 재판과정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

또한 같은 가해자로부터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찾아내는 보강 수사를 실시하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 증언해 줄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경찰의 태도 속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처의지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피해자가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었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사건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담원이 동행하여 줌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데, 특히 3차례의 가해자와의 대질심문에서 피해자는 공포감을 표현하고 솔직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피해상황을 진술하도록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듯한 언동을 보였으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피해자의 진술이 본 회와 보호 시설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된 진술이라고 주장하며 위증으로 피해자와 보호시설

의 시설장 등을 고소해 놓았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역고소가 여성계의 미제로 남아있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활동 자체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되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각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힘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역고소 사건들에 대해 사법계에서 분명한 피해자 중심의 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9. 이웃 남자들에 의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집단성폭력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김옥희(가명) - 21세, 여, 중졸, 정신지체 2급
- 가해자 : 하영봉(가명) - 74세, 기혼남, 농업
 이씨 - 58세, 기혼남, 농업
 김씨 - 43세, 기혼남, 농업

2) 사건내용

이것은 정신지체 장애 여성인 김옥희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남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다.

피해자 김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영봉씨에 의해 처음 성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7년간 성폭력이 지속되었으며, 두 번의 낙태를 하였다. 하씨의 부추김으로 이씨, 김씨도 성폭력을 가하였다.

99년 6월부터 피해자 김씨는 가해자 하씨가 소개한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10월 1일 임신 7개월임이 밝혀져 친정으로 쫓겨 왔다. 김씨가 동네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7년 간의 마을남성들에 의한 성폭력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마을 공동체는 심각한 충격에 빠졌다. 이장, 부녀회장 등을 비롯하여 주민들은 한 동네에서 한 사람의 장애 여성을 여러 남자들이 성폭력한 천인공노할 사건에 분노하면서 장애여성의 인권과 공동체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마을 회의를 열고, 가해자 중 범죄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된 하씨를 1차 고발하였다.

1차 고발은 가해자의 처벌 없이 종결되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

범 하씨의 횡포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모두 마을을 떠났고 고발자들과 “열 계집 싫다는 남자 있느냐”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사건을 한 독자가 여성신문에 제보하였다. 여성신문사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이 사건을 장애여성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수 차례의 전화통화를 한 결과, 성폭행이 7년 간 집단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 김씨는 상황판단과 의사표현과 언어 전달력이 떨어지며, 김씨 가족 역시 정신 지체 장애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여성신문사와 강릉여성의전화(이하 본 회), 좋은 친구 장애인선교회가 연대하여 노인회관에서 김씨 가족을 포함한 마을주민 100여명이 김씨 사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본 회가 중심이 되어 인권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 과정 (2001. 8. ~ 2003. 10.)

2000년 1월 28일 본 회가 중심이 되어 공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대책위원회 소속단체와 마을주민들이 강릉 시내 중심가에서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가두시위와 서명운동을 하였다. 이어 공대위 대표 이름으로 강릉지방법원 춘천지원에 가해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1월 8일 여아를 출산했으며, 아기와 김씨는 강릉의 긴급 피난처인 ‘후견자의 집’ 등에 거주하다, 2월 16일 아기는 강릉의 영유아보육 시설로, 김씨는 서울의 장애인 그룹홈에 입소하였다.

공개대책위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 66개 단체가 되었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가두시위, 정기 화요서명운동, 장애여성 성폭력 실태 및 대책 토론회,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등이 서울과 강릉에서 진행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해자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지부들이 진정서, 탄원서를 수 차례 재판부에 접수하였다. 2000년 10월 5일, 1심 선거공판에서 가해자 하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다른 두 명의 가해자는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정신지체여성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첫 판례가 되었다. 피해자 김씨는 검사 결과 정신지체 2급으로 사고력과 판단력 등 지적능력의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공대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거 정신지체로 인한 지

적 능력 결함 그 자체가 항거불능상태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출산한 아이는 현재 강릉의 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으며, 김씨는 서울의 정신지체 여성그룹홈에서 생활하며, 교육과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2003년 현재 본 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씨가 거주하는 정신지체여성 그룹홈이 후견단체가 되어 김씨의 가족과 김씨의 권리보호와 자기결정권행사를 위해 후견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을 통해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상담하는 쉼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김씨의 가족도 정신지체라 김씨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일반 쉼터의 여건상 김씨와 같은 정신지체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입소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문혀져 버릴 것 같았던 사건을 본 회와 여성신문사와 함께 하면서 언론을 통해 사건을 알리고 공대위가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언론들이 정신지체여성 성폭력 사건으로는 최초로 수면위로 떠오른 이 사건의 추이에 관심을 갖게 되는 한편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여론화, 사회문제화해서加해자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여성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장애여성의 인권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에서의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수사 방법,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성폭력 관련법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이 사건은 새로운 판례가 되었다.

김씨 사건을 계기로 그 이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 문제화 되어서 장애여성성폭력 상담창구가 제도화되었다.

본 회는 지역과 전국 단위의 여성단체,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축적하였고, 이 사건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본부와 지부, 여성신문사 등의 자매애에 힘입어 여성인권단체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성폭력

30. 보육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영생애육원 초 5학년에서 중 2학년까지의 여자 원생 다수
 - 加害者 : 전상태(가명) - 영생애육원 전도사, 38세
신옥길(가명) - 영생애육원 원장

2) 사건내용

충남 온양에 있는 ‘영생애육원’ 이란 고아원에서 교양담당 목사가 여자원생 수명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이곳에서 목사로 불리는 전도사 전씨(당시 38세)였는데 그는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 또는 안마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방에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1, 2학년 여자원생들을 불러들여 온갖 성추행을 자행하였다.

전씨는 안마를 시키다가 여자 원생들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했고, 성기 부분을 손전등으로 비춰 본다거나, 여자 원생이 목욕하는 도중에 들어와 성기를 만진다거나,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라고 강요하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또한 진상 조사 과정에서 고아원장이 중1년생을 강간한 사실도 밝혀졌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

1988년 1월 한국여성의전화(이하 본회)는 충남 온양에 있는 복지기관 ‘영생애육원’에서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는 ‘애지’라는 대학생 서클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애지’는 주로 고아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습활동과 정서교육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 서클인데 약 6년 동안 영생애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던 중 1월 초에 이곳을 방문했다가 비로소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애자회 학생들은 편지를 보내 전도사 전씨가 여자 원생들을 성추행한 사실과 더불어 원생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행하고 있는 사실은 폭로했다. 또한 성폭행 사실 뿐 아니라 열악하기 짝이 없는 고아원의 생활 환경과 갖가지 비인

간적인 처우들도 자세히 고발하고 있었다.

본 회는 즉각 애지회 학생들과 면담을 주선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 전도사 전씨의 구속, 원장과 보사부 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문책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본 회의 5명의 피해 원생들의 자술서를 받아 3월 9일 치안본부에 전도사 전씨를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영생애육원이 있는 온양지역의 인권단체들과 대학생 봉사연합서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그리고 서울의 인권단체들과 접촉을 확대해가며,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되 원생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3월 16일자로 입건된 전씨는 3월 24일자로 구속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원장 또한 84년에 중 1년생을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본 회는 다시 원장에 대한 수사를 치안본부에 의뢰하는 한편 보건사회부에 대해서도 영생애육원에 대한 감독소홀과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보조금 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온양경찰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원장의 구속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보사부 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본 회는 재판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영생애육원 사건을 고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각 언론사, 기관, 단체, 대학 그리고 충남지역의 인권단체에 배포하여 여론형성에 주력했다. 애지와 같은 봉사서클 15개 팀으로 공동대책위원회도 결성, 사건해결에 적극 나섰다.

마침내 사회여론이 심상치 않게 되자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보사부는 ‘새로운 운영진 구성, 신축건물로의 조속한 이전, 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실시’를 약속하는 회답을 보내왔다. 친고죄 규정에 따라 구속을 모면한 원장은 단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되었다. 원장은 재판과정에서 끈질기게 혐의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어린 여학생들이 법정에 서야 하는 고통을 겪게 했지만 결국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 성과와 의미

본 회가 86년 ‘여성문제고발창구’를 개설한 이후 상담창구에 접수된 사건을 법적 투쟁으로 이끌어낸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복지시설의 비리가 폭로되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의 인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사건은 복지정책의 취약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보호자 없는 시설아동들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성폭력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준 생생한 사건이었다.

또한 이 사건은 성폭력에 대한 법규정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냈는데 특히 친고죄 규정의 문제성을 명백히 드러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원장의 경우 강간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한 구속할 수 없는 법의 한계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고 법적 재제를 모면하는 불합리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본 회의 이런 현장체험은 시설아동들의 경우 시설의 장이 수용아의 법정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성폭력 피해자는 친고죄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체험과 인식은 이후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의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여성의 일할 권리를 위협하는 직장 내 성폭력

31. 아파트 관리주임에 의한 환경미화원 성희롱 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한미원(가명)- 환경미화원
- 가해자 : 우경수(가명)- 환경미화원 관리주임

2) 사건내용

한미원씨는 지난 2년간(1999 ~ 2000) 성남시 소재 은행주공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관리주임 우경수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성희롱(강제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함을 호소하며 성남여성의전화(이하 본 회) 지원을 요청하였고, 동행인으로부터 위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가해자 우경수는 주공아파트의 관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현재 홀로 사는 점을 들어 한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우씨는 업무 중인 한씨에게 수시로 커피 타기 등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하였고, 수 차례 사적인 잡담을 하며 어깨나 엉덩이에 손을 대는 등 장난을 빙자한 지속적인 성추행을 해왔다. 이에 한씨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씨는 1999년 가을 업무적인 일로 사무실에 들른 피해자를 강제로 포옹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던 중에 동료에게 목격되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분개한 동료가 항의하자 가해자는 항의하는 동료에게 노골적인 성적 폭언을 하는 등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처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관리주임 우경수에 대한 투서가 2000년 4월 동대표 임원회에 날아들었으나 무시되었고, 이후 2차 투서가 계속되자 동대표회의를 통해 위에 명시한 사건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사표를 내는 것으로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인 것처럼 주장하며 거짓 진술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는 수치심으로 인

해 그 동안의 피해 사실을 덮어두고자 하였으나 가해자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와의 관계가 부적절한 것처럼 소문을 내고 투서와 진술서를 빌미로 피해자와 목격자를 협박하여 두 사람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3)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0. 10. ~ 2001. 7.)

가해자의 계속된 협박과 거짓소문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한씨와 동료가 본 회로 상담을 신청하여 사건을 접수하였고 상담 후 직장 내 성희롱이라 판단하여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동 대표나 관리소 측의 공정한 조사에 의한 피해자의 처벌(징계 의한 사과와 해고)만을 원하였다. 본 회는 주공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부녀회 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진상을 밝히고 사실일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과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안하는 질의서공문을 보냈다.

공문이 관리사무소에 보내진 직후 가해자는 관리소 반장과 미화 반장 등 5인과 함께 본 회를 방문하여 공문발송 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목격자는 이 사건에 대해 제3자이며 가해자가 목격자에게 했던 성적 폭언을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그 판단은 본 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리사무소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처리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답변하고 돌려보냈다. 잠시 후 목격자는 본 회로 전화하여 가해자가 질의서 건으로 자신에게 항의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호소했고 피해자도 심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11월 이 사건으로 우경수는 미화원 성희롱문제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통하여 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월 2회 실시하는 안전 교육 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우경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우경수의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1년 1월, 본 회는 피해자 한씨가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긴급한 전화를 받고 이 사건에 대한 2차 개입을 하기로 결정하고 성남시의 9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로<성남시 은행동 주공아파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지역대책

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였다.

대책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성희통으로 해고된 가해자에 대하여 성희통은 인정하지만 해고는 징계권남용이라는 판단으로 복직결정은 내린 것은 심각한 여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이며, 앞으로 직장 내 성희통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의 발표로 언론에서 관련사실을 기사화하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성희통이 해고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는 피해자와 여성단체의 입장과 성희통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남용이라는 지방노동위의 결정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대책위는 관리사무소와 은행 주공아파트 동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것을 설득하는 한편 민주노총과 협의하여 노무사를 섭외하였다. 은행주공아파트 주민과 부녀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 “피신청인이 성희통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게 사죄 등을 하지 않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진술을 한 동료직원을 고소하고, 그 외에도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무고하게 상급자를 고소하는 등 직장 내에서의 학합을 저해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다.

대책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해소되었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은 성희통 가해자를 부당해고 한 것이 징계권남용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투는 것이었다.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간단하게 정리되는 듯 했으나 가해자가 부당 해고라는 진정을 내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측면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적으로 직장내 성희통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긴 했으나 이를 징계하는 내용이 너무 미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결과를 낳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본 회가 이 사건을 지원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성희통했다고 해서 가해자의 노동권을 뺏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그러나 대책위 회의를 통해 직장 내 성희통이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남성중심적이라는 판단을 내

리게 되면서 사회적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희통이 별 것이 아니며 그런 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의 발현이었음을 널리 알리고 실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아무런 대책 없이 복직을 시키는 것은 피해자를 일할 구녀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홍보하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언론의 관심 있는 보도로 인해 결국 성희통이 심각한 문제임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평생노동권 보장과 함께 성희통가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얻어낼 수 있었고 직장 내 성희통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건이었다.

32. 대형할인매장의 여성근로자 ‘군 서비스교육’ 동원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그룹 할인매장 여성노동자
- 가해자 : ○그룹 할인매장 대표

2) 사건 내용

○그룹 할인매장은 2000. 5. 17.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서비스 역량강화훈련’이라는 계획 하에 7차례 걸쳐 여성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군부대로 데리고 가서 서비스교육과는 무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에게는 성적 수치감과 불쾌감을, 군인들에게는 성적 자극과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회사는 참가자들에게 교육 장소, 교육 내용에 대해 사전공지도 하지 않은 채, 참가자에게는 ‘교육’으로, 육군에게는 ‘위문행사’로 통보된 채 훈련을 진행하였다.

회사 소속 사진사와 인솔자는 여성근로자들에게 군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였다. 예컨대 도착 시 환영하는 군인들을 포옹하며 인사하라고 했고 체육 활동 중에는 여성근로자 1인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군인들 2명이 서로 서로 손을 잡고 축구를 하라고 한 행위, 주소를 교환하게 하고 포옹하게 하는 행위, 사진촬영이나 식사시에 군인들 사이에 끼여 앉게 하는 행위, 식사를 먹여주게 하는 행위 등 군인들과 근로자들의 신체적 접촉을 하게 하였는데 여성 근로자들이 불

쾌감을 표시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인솔자가 이를 재촉하였다. “군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교육이다” “그냥 인사만 하지 말고 포옹도 꽉 하여라”

“군인들을 즐겁게 해주어라” “음식을 먹여주어라” “안아주어라” 등의 인솔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또한 인솔자들은 수시로 “군인들이 기쁘게 위문을 잘해라” “서비스를 잘해라” “다음에 올 때는 군인 수 만큼 짚고 싱싱한 아가씨만 뽑아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를 해주려 왔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등의 말을 하였다.

○그룹 노동조합 2000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안양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그룹 노동조합 투쟁지원을 위한 안양군포의왕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발족되었는데 본 회는 대책위를 통해 위의 사건이 명백한 성희롱임을 알게 되어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0. 8. ~ 2001. 3.)

2000년 8월 안양여성의전화(이하 본 회)는 대책위에 합류하여 본 사건을 접수하였다. 9월 초에 피해여성노동자들 중 5명을 만나 사건의 내용을 듣고 녹음을 하였다. 본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여성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고 할인점의 5명 여성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시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대책위의 이름으로 여성특별위원회에 조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또한 대책위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국방부에 회신을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하였는데 국방부에서는 질의서를 접수하여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착수하였다.

10월 6일 국방부 조사관 박소령이 직접 대책위를 방문하여 대책위 와의 면담이 있었다. 사병들의 성희롱은 없었으며 군부대방문은 전방체험과 위문방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진행프로그램은 ○그룹 측에서 진행하였고 회사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다고 하였다. 대책위는 군부대 위문형태의 변화를 촉구하였으며 관련사항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사실공개를 요청하였다.

대책위는 매주 토요일 할인점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성희롱, 성폭력 및 폭력기업 불매동참 촉구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9월 21일 안양 전진상회관에서 대책위와 안산여성노동자회, 시흥, 중계, 안산, 안양 여성노동조합원이 참여하여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군부대에서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받았으며,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같은 날 대형할인점 앞에서 대대적인 캠

페인을 같이 전개하였다. 할인점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을 내용으로 하여 대책위의 단체 대표를 고소하였다.

한편 본 사건을 맡은 여성특별위원회 이조사관은 여직원들이 회사의 협박 등으로 사건의 중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그룹측의 방해공작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였다.

11월에는 25명의 성희롱 피해여성들을 위한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공대위내에 성희롱 대책위를 띄우고 활동하던 중 12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성희롱으로 판정이 났다. 성희롱 판정 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들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서 미처 성희롱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군서비스교육’ 사건을 투쟁의 쟁점 중의 하나로 이끌어나간 것이 큰 성과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성희롱사건을 드러내면 총파업에 대한 쟁점이 희석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것은 성희롱사건을 사적인 영역으로 보는 남성중심적 사고여서 같은 노동문제 내에서도 여성의 문제는 더욱 왜곡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을 느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민단체의 활동도 주요했지만, 성희롱 피해자 중 끝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몇 명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회사의 협박, 회유 등으로 하나, 둘 빠져나가고 또는 말을 바꾸는 상황에서 대질심문에서까지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주장했던 용기있는 여성노동자들 덕분이었다.

33. 부동산 중개사에 의한 사무원 성폭력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김현숙(가명) - 38세, 현 법무사 사무실 근무
- 加害者 : 장민국(가명) - 59세, 부동산 중개인

2) 사건내용

김현숙씨는 대학진학에 실패하고 서울로 상경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중 시골

에 사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로 힘든 집안 살림을 생각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부동산 사무실 앞에 붙어 있는 '사람 구함'이라는 유인물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다. 3시까지 근무하고 학원에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으며 급여도 학원비와 용돈에 충분하였다.

당시 사장의 주변에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고 사장은 많은 돈을 써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고, 그러한 사장의 행동이 김씨에게는 도덕성 이전에 사장의 쓴씀이가 하나의 힘으로 보였다.

그런 중에 수능시험 2개월 정도를 앞두고 사장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생겼으나, 사장은 많은 권력층 인사들과 교분이 있었고 뒤를 도와주는 폭력집단(평소 사장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음)이 있어서인지 1개월 후 출감하였다. 사장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학원수업 끝나고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여 저녁을 먹고 사장은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와 김씨의 자취집에서 성폭력을 하였다.

그 후 대학에 다니면서도 김씨는 계속 부동산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장의 끈질긴 성폭력과 협박에 김씨는 풀썩하지 못하였다. 김씨는 사장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으나, 사장은 김씨의 부모와 형제에게까지 가해와 협박을 거침없이 하여 김씨로 하여금 더 이상 저항을 할 수 없게 하였다.

"나하나 희생되면 모두들 안전한데"라는 생각에 체념하게 되었고, 사장이 하는 모든 일과 행동들이 정당하지 안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너를 위해 하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폭력을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던 중 조카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언니 집에 갔다가 김씨는 사장으로부터 형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 언니 집 거실에서 심하게 맞았다. 이를 말리던 언니도 가슴을 다쳤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파출소에 신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인 장민국은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을 가버렸고, 그럴 때마다 "경찰이 미리 내게 전화를 해주었다" 라며 김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오히려 두려움만을 크게 심어주었다. 어린 조카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모든 가족들이 보복이 두려워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김씨의 언니가 강화여성의전화(이하 본 회)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3) 경과 및 운동과정(2002. 5. ~ 2003. 4.)

본 회는 피해자 김현숙씨와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상담 방향과 원칙은 피해자 자신이 폭력상황을 제대로 인지하도록 하는 것과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삶의 결과에 관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씨에게 힘을 주는 것이었다.

피해자 김씨는 오랫동안 폭력의 상태에서 있다보니 자신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 본 회가 폭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한다는 것, 여성의전화라는 인권단체가 철저히 내담자의 편에서 함께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 동안의 상담이 내담자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깊게 각인된 폭력은 내담자가 자유롭게 외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는 못했다. 누군가가 감시를 한다는 내담자의 느낌은 폭력에 훈련된 사람의 어눌함과 경직된 수동적인 모습이었다. 늘 주변을 살피며 얼굴을 가리었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본 회는 김씨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증인이 될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남자 직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10년 가까운 지속적인 폭력관계가 김씨와 가해자간의 합의된 삶의 형태로 오해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빈틈없는 증거 자료가 필요했다. 내담자의 상황과 진실은 여성의 눈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 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스스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도록 했으며, 재판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는 가해자가 무고로 풀릴 가능성도 있음을 주지시키며,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김씨는 의사에게 비밀리에 사실을 이야기하여 폭행 상황을 알게 된 의사는 가해자를 돌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병원에서 7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어 김씨는 곧바로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즉시 구속되었다.

가해자가 구속된 후에도 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던 김씨는 약간의 공황증세 - 명한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는 현상, 갑자기 밀려드는 두려움에 걸을 수 없는 상황 등 -를 보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한다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고 매주 1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폭력 증거를 사진을 통해서 또는 증인을 통해서 제시했지만 경찰 조사결과는 내담자의 편이 아니었다. "문 밖만 나가면 파출소인데 왜 지금까지 그냥 있었는가?" "경찰에 알릴 기회가 수없이 많았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어 왔느냐”는 물음에 내담자는 기가 죽을 수 밖에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장민국의 변호인은 변호인 없는 내담자를 늘 궁지로 몰아넣었다. 특히 가해자 부인의 간통죄 역고소와 가해자 변호사의 “왜 그동안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좋아서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느냐? 당신의 가족들이 가해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등의 갖가지 잘못된 증거는 그럴듯한 사실이 되어 내담자를 혼란스럽게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형제와 자매들의 재산 형성(주공 아파트, 빌라 정도)과정이 가해자 장민국의 도움이 아니었음이 드러났고 피해 가족들에게 오히려 내담자로부터 착취를 일삼아 온 사실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원칙적이고 흔들림 없는 담당검사의 조사 자세는 내담자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7개월 간의 기나긴 재판 과정은 여러 번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피해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정서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버틸 힘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본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김씨의 노력으로 인해 가해자는 2년 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 성과와 의미

10여년간 지속적 폭력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한 피해자의 현실은 그동안 우리 여성들 앞에 놓인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에 폭력이라는 이름조차 붙이지 못했다. 재판장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김씨의 얼굴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라는 확신에 찬, 자신감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34. ㈔용역경비에 의한 여성노동자 성추행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용역경비해고노동자
- 가해자 : ㈔용역경비용역경비

2) 사건내용

2002년 6월 효성해고노동자들이 복직과 총회 선전전을 하고 있던 당시, 효성

측에서 해고노동자들의 출입을 막고 선전전등을 저지하기 위해 투입 요청한 용역경비에게 여성노동자들이 성추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6월 8일 오후 2시 30분 경 (주)효성 공장 앞에서 용역경비 2명이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가해자는 피해자 뒤에서 엉덩이를 바짝 대고 성행위 하듯이 움직이며 “기분이 어때?” 하고 물었다.

이 행위는 해고자 복직위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심한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성 안면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2. 6. ~12.)

이 사건은 여성노조(준)로 접수되어 울산여성의전화를 포함한 지역여성단체들과 대책 회의를 가진 후 곧바로 대책위가 꾸려졌으며 기자 회견과 동시에 대책위 명의로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대책위 측이 증거로 제출한 비디오를 담당 형사가 임의로 폐기 처분하였다. 이 사실에 경찰서장과 면담하고 사죄와 책임 추궁을 강력하게 하였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지역의 각계인사들을 조직하여 검찰청사 앞에서 ‘지역인사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직원들의 저지로 마찰이 발생하여 대책위 3인이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소환장을 발부받은 대책위 중 한사람이 검거되어 수감되었고, 석방 요구집회 후 석방이 되었다.

대책위는 집시법 위반에 대해 여론화시키는 한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여성부 등에 진정서를 내고, ‘직장성폭력실태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구속이 되었다.

4) 성과와 의미

지역 특성상 많은 직장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가해자를 구속시킨 성과가 있었다.

노동현장의 분쟁을 막기 위해 파견한 용역경비들에 의한 성추행이 점차 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여 용역 경비업법 개정 등의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35. Ⓛ 주식회사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배순화(가명) 등 5명 - Ⓛ사 포장반 근무
- 가해자 : 이문기(가명) 등 3명 - Ⓛ사 관리자

2) 사건내용

피해자 등 5명은 Ⓛ회사 천안공장에 근무하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노동자들로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쳐 같은 부서 직장 상사로부터 현장과 회식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을 당했다. 가해자인 이문기와 관리자들은 회사 현장에서 피해 여성노동자들의 어깨와 손, 목덜미와 귀를 만지고, 뒤에서 안고 뾰뽀하자고 입술을 내밀고 엉덩이를 톡톡 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행위를, 피해자들이 싫다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또한 회식자리에서는 피해여성노동자들에게 술 따르라, 안주 달라 하였고, 가해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면 피해자들의 볼과 입에 뾰뽀까지 하였고, 심지어 가해자가 입에 넣었던 안주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먹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들이 직장 상사들이라 (물론 싫다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했지만),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다가 노동조합에서 파업 중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말하라는 노조위원장의 권유로 성희롱 사실을 폭로해, 노동조합에서 회사 측에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징계에 앞서 진상 조사부터 하자고 하여 노조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결과는 일부만 성희롱으로 인정할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성희롱이라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징계위원회 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여성들은 천안여성의전화(이하 본 회)에 문의하여 상담하였고, 상담 결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 (2003. 3. ~ 2003. 9.)

본 회에서는 상담 결과 이 사건을 직장내성희롱으로 판단했고, 우선 회사 측

에 대해 피해 여성노동자들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 증명으로 우편 발송했다. 질의서를 받은 회사 측은 본 회에 회사와 노조가 이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하겠다고 전하로 통보했다. 그 후 회사 측은 공동 조사결과 일부 관리자의 가벼운 신체 접촉행위만 인정되므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본 회에서는 피해 여성노동자들과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을 사법기관에 의뢰해야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선 세 기관에 고소할 수 있었다.

첫째는 노사 갈등 중 하나로 불거진 문제이므로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었고, 다음은 경찰에 가해자들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노동부에 조사 요청하는 문제는 이미 노조에서 시도하였으나 천안지방 노동부의 입장이 회사 측 입장과 비슷해 신고기관에서 제외하였다. 경찰서와 여성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여성부에 신고하면 경찰서에는 언제든지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여(경찰서에 고소하면 여성부에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고 함) 일단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신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여성부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여성부는 직장내성희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여성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기 때문이었다.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의 조사기간이 90일이므로 회사측 반응과 가해자들 반응을 지켜 봐 가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면접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 앞으로 본 회, 노동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본부가 각각 Ⓛ회사 성희롱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전달했다.

또한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노동조합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리본을 착용하고 일하는 등 회사 측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으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소위원회는 본 회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서 피해 여성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었다.

7월 말이 되어서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이 나왔는데, 첫째 회사 현장에서의 가해자들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하였고, 둘째 회사 측은 피해 여성 노동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과, 회사 안에 성희롱 전담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라는 결정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회사 측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9월 초에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회사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여성부 결정에 대해 회사 측은 가해자인 관리자들에 대해 전보발령을 내렸고, 나머지 결정에 대해서는 만약 회사 측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엔 여성부에서 언론기관에 공표한다는 사실을 회사 측에 통보하였다.

4) 성과와 의미

피해자들이 직장을 다니는 여성노동자들이므로 상담 시간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노동조합과 긴밀한 연대 등으로 피해자들이 직장내성희롱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지속해갈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이번 사건은 직장내 성희롱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내성희롱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징계를 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든 사원과 회사 측이 인식하도록 노력하였다.

경제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성희롱은 여성 개개인이 공론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피해여성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과 개인들의 용기 있는 행위로 인해 직장내 성희롱이 다양한 방법과 사법 절차를 통해 처벌받는 계기가 되었다는데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성매매된 여성들: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을 넘어서

36.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밝혀진 대구자갈마당 업주에 의한 성매매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조미숙(가명) 등 - 자갈마당 유흥업소의 성매매 여성
- 가해자 : 자갈 마당 A유흥업소 업주

2) 사건내용

피해자 조미숙씨는 대구에 있는 금방 빚도 갚을 수 있고 돈도 금방 벌 수 있다는 업주의 말을 믿고 업주를 따라 자락마당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처음 말과는 달리 업주는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까지 하루에 10여명의 손님을 받게 하고, 낮에도 손님이 있으면 받게 하였고, 업주의 철저한 단속으로 감금생활을 하면서 돈벌이는 커녕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손님이 10만원의 화대를 주면 빼끼가 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돈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뜯어가고(공과금, 술값, 방세 등 이상한 돈) 해서 하루 2~3만 원 수입이 전부였다.

피해자는 견디기 힘들어서 서울 MBC에 제보하였고, 대구 MBC 기자와 연결이 되었다. 9월 26일 저녁 8시에 MBC 기자와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경찰이 업주를 긴급 체포하고, 함께 일하던 여성 12명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였다. 조씨는 조사를 마치고 짐을 싸 집으로 돌아가려다 업소 밑에 있는 다른 업주들이 무서워서 MBC 기자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기자가 관할 파출소인 달성파출소에 연락해서 경찰을 불러주었다. 경찰 두 명이 와서 한 명은 여성 4명을 파출소로 데리고 가고 나머지 한 명은 빼끼인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을 데려왔다.

파출소에서 경찰은 피해여성들에게 '집에 가고 싶다'는 진술서를 적게 하였고 빼끼 이모는 차용증을 적으라고 강요하였다. 차용증을 못 적겠다고 하였으나 경찰이 옆에서 차용증을 적어야 갈 수 있다고 거들어 피해자들은 차용증을 쓰고 지장까지 찍었다.

본 회는 이 사건을 접한 MBC 기자의 제보로 2000년 9월 27일 이 여성들을 상담하게 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0. 9. ~ 2001.1.)

본 회는 피해여성과 상담을 한 뒤, 9월 29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명의로 '대구자갈마당의 A업주의 엄중 처벌 및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였으며 대구지방경찰청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9월 30일 달성파출소 소장과 중부경찰서 검찰계장이 상담소를 찾아와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본 회는 차용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며칠 후 중부경찰서 감찰 계장이 차용증을 본 회로 가지고 와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달성파출소 소장과 경찰관 2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업주와 소개소에서 피해자들을 계속 전화로 협박하여, 2001년 1월 10일 본 회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의 명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협박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각서를 받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자갈마당 업주 등 관련자들은 모두 형사 입건된 후, 대구지방경찰청에 송치되었으며 자갈마당 관할 달성파출소 직원 가운데 여성인권유린에 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징계조치되었다.

4) 성과와 의미

경찰과 업주가 서로 유착관계에 있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주와 결탁하여 차용증을 강요하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성매매에 대한 경찰과 업주의 관계가 잘 드러난 사건이었다.

성매매 지역에서의 업주에 의한 구조적인 착취 및 감금, 폭력에 시달리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항의 서한을 띠워 현금보관증을 즉시 돌려받고 경찰관이 인사조치와 징계가 되는 등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37. 유흥업소의 성매매 피해여성 구출기

1) 인적 사항

- 피해자 : 정안나(가명) - 23세, 모 유흥업소 근무
- 가해자 : 한우길(가명) - 50대, 모 유흥업소 사장

2) 사건내용

피해자 정안나는 고 2때 친구들과 선배들로부터 집단 구타와 왕따로 피해를 받았다. 이 후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면서 자고 먹을 장소가 없어 티켓다방에서 일하게 되었고, 배달과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2차 나가는 것이라고 업주가 말해 2차를 하면서 소개소와 연결되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소개소를 방문해서 처음으로 유흥업소에 가게 되었는데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옷과 화장품, 미용에 들어가는 돈들이 필요했고, 다방에서 일할 때 노래방, 단란주점으로 티켓 끊고 나가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생리라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면 별금이 있어 누적된 빚과 소개비를 주기 위해 선불금을 당겨쓰게 되었다.

1년 정도 유흥업소를 전전하다보니 옮길 때마다 소개비와 선불금은 늘어났고 대전 모 업소에서 빚을 갚아주겠다는 한 남성을 만나 나오게 되었다. 그 남성과 3개월 동안 지내며 트럭에서 배추도 팔고, 무도 팔며 살았지만 빚을 갚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그 업소에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업소 사장과 잘 아는 익산의 모 업소로 오게 되었는데 선불금은 소개비를 포함해서 24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이며 차용증은 5개나 되었다.

동거 중 임신이 되어 임신 3개월이었는데 업소 사장은 이런 정안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업소의 2층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업소는 불을 끄고 영업을 했으며, 임신 중이라 몸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소에서 나오고 싶어 동생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익산여성의전화(이하 본 회)에 신고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 (2002. 7. ~ 10.)

2002년 7월 10일 밤 11시에 본 회로 방문하겠다는 긴급구조요청전화를 받고 피해여성의 어머니, 이모, 이모부를 만났다. 피해여성은 어머니를 통해 익산의

모 유흥업소에서 감금에 의한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구조 요청을 해왔다.

그 업소에 피해여성이 현재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얼마 전 민·관·경이 상담을 다녀온 상담일지를 찾아 확인해본 결과 상담일지에 피해여성의 자료가 있었다. 어머니가 피해여성과 간단히 건강을 묻는 전화를 하여 재확인을 하였다.

유흥업소에서 피해여성을 구출하기 위해 이모부와 여성단체, 00경찰서 계장과 형사들 6명이 해당업소를 방문하였다. 20대 후반, 40대 초반의 남성들이 업소 입구 골목좌우를 막고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불을 끈 상태에서 영업하던 사장과 함께 온 경찰들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났다. 사장은 불을 끈 상태라 업주 측에서는 영업도 하지 않는데 무슨 목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다른 집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 업소에만 와서 단속한다며 감정이 뒤섞인 억양과 격양된 목소리로 문을 열지 않았다. 업주와 경찰이 이런 실랑이를 하는 동안 업소 측이 핸드폰으로 피해여성들을 뒷문을 통해 빼돌리려는 것을 피해자의 어머니가 발견하여 자동차를 막고 선 채 구조 요청을 하였다. 피해여성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구출된 피해여성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승용차에서 나와 본 회 인계되었는데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급하게 피신하느라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 중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피해여성은 경찰 조사를 통해 업소에서의 생활, 비합법적인 행위사실, 성매매 사실과 업주의 성매매 알선 및 불을 끄고 영업을 하는 실태를 고발하였다.

업주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시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과태료 500만원으로 처리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피해자는 생계지원 및 직업교육을 통한 자활 지원을 받기 위해 서울의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쉼터에 입소하였다. 그곳에서 정신적, 육체적(내과, 산부인과, 치과 등) 치료를 받으며 집단상담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의식향상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한 생계를 위한 직업 교육으로 미싱을 배우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건강하고 밝게 지내고 있다.

4) 성과와 의미

본 사건을 통해 가출한 여성이 경제적인 부분이 취약한 상황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동의 장소는 성을 도구로 판매하는 직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번 발을 들인 유흥업소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쉽게 자신의 의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약점을 이용한 업주는 선불금이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여성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업주의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의 강한 의지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검찰과 시가 당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에도 다시 같은 업소에서 구조요청이 왔으며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여성을 구출하였다. 같은 업소에서 1년에 3회 고소가 처리되면 폐쇄처분이 된다고 한다. 성매매 업소 현장에서 어렵게 가족을 동원하여 구조요청을 한 피해자의 강한 의지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38. 티켓다방으로 유입된 10대 가출청소년 구출기

1) 인적사항

- 피해자 : 김진아(가명), 이민아(가명) - 18세, 가정불화로 가출
- 가해자 : E다방 업주

2) 사건내용

친구 사이인 김진아와 이민아는 가정 불화로 함께 가출하였다. 진아는 어머니의 폐물을 가지고 집을 나와 친구인 민아와 같이 대천과 서천에서 놀다 돈이 떨어지자 민아가 서천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돈과 잠자리가 필요하니 일자리를 봐달라고 부탁하여 40만원의 선불금을 받고 군산에 있는 E다방으로 오게 되었다. 업소에 오기 전 업주가 서천으로 와 월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일일 매상 중 주인 : 아이들 = 6 : 4로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아이들은 주민등록증 앞자리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85년생을 83년생으로 고친 뒤 보건소로 가서 보건증을 만들었다. 업주가 방을 얻으라고 하자 여관방을 구하려고 했으나 빚을 질 것 같아 업소에 딸린 방에서 기거하기로 하였다. 다방주인은 아이들을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일하게 하였고 핸드폰은 다방주인의 부인 명의로 만들어 주었다.

군산여성의전화(이하 본 회)에서 군산 E다방에서 티켓영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자 아이들은 업소에서 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성매매는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업주는 아이들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였으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채용한 사실이 아이들의 상담을 통해 확인되었다. 업주는 핸드폰만 해 주었을 뿐 선불금은 남자친구에게 준 것이 전부이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찾아와 반갑기도 했지만 진아는 부모님의 폭언과 폭력이 무서워 집으로 돌아가기 싫고 민아는 집에서 나와 산 지가 5년 정도 되어서 집으로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현재 민아는 서울에 가서 살고 있고, 진아는 사촌언니네로 가서 학원에 다니고 있다. 아이들은 본 회에 감사하며 다시는 이런 업소 쪽으로는 발길을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3) 경과 및 인권활동과정

아이들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군산에 있는 B다방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두 곳이 있음을 확인하고 본 회는 터미널 근처라는 말을 근거로 그동에 있는 다방으로 확신하고 군산경찰서 여성상담실의 권경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권경위는 가출청소년이 두 명이므로 한 아이만 데려오면 다른 아이를 빼돌릴 염려가 있어서 비밀통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통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진아는 티코를 타고 차를 배달하러 나갔고 민아는 오토바이(택트)를 타고 있음을 확인하고 권경위는 경장동파출소 경찰 두 명과 함께 근처 성당에서 잠복을 하였다. 본 회의 상담원은 아이들 두 명이 다방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근처 교회 옥상에서 다방을 감시하였다. 아이들이 둘 다 있음을 확인한 후 경찰과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출하여 나왔고 업주와 티코를 모는 청년은 경찰차에, 아이들은 상담원 차에 태워 경장동파출소로 이송되었다.

업주는 미성년자를 부모의 동의 없이 고용하였지만 처벌사항이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처벌하였으나 2개월 후면 나올 수 있고, 건강진단 미필은 과태료 부과될 것으로 정리되었다.

4) 성과와 의미

본 사건은 가출한 청소년들이 잠자리와 먹을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성매매업소에 들어가고, 성매매의 굴레 속으로 빠지게 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사회의 무관심과 가정에서의 폭력, 폭언은 아이들을 가정 밖으로 몰아내고, 성매매라는 끔찍한 상황까지 가게 한 것이다.

성매매 된 여성들 중 가출하여 업소에 들어간 청소년들은 경찰이나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아직도 성매매의 굴레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사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가 많은 친구들은 성매매의 악순환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청소년들이 상담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지역 내에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

성매매의 근절 및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며 유착관계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매매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39. 전투경찰에 의한 여대생 추행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경희대 여학생 3명
- 加害者 - 시위 진압 전투경찰

2) 사건내용

1984년 9월 4일 전두환 대통령의 ‘매국적 방일 저지’ 시위에 참석했던 경희대 여학생 3명이 청량리 경찰서로 연행되어 유치장 안에서 전경으로부터 알몸으로 심한 성적 회통과 추행을 당했다. 83년 이후 반독재 투쟁, 생존권 투쟁이 활기를 띠자 이에 대한 경찰 등 공권력의 폭력적 대응도 점점 극악해지고 마침내는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이즈음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여대생 추행사건은 사례건수만도 예닐곱에 이르렀다. 여러 시위 등에서 무차별로 연행된 여학생들을 청량리 경찰서, 서대문 경찰서 등지에서 전투경찰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한웅큼씩 머리카락이 뽑히는 매질, 워커발로 짓밟기, 나체로 기합주기(생리 중인 여학생까지), 유방 주무르기 등의 온갖 방법을 동원, 여학생들에게 모욕을 주며 수치심, 좌절감, 모멸감을 심어주었다. 시위 저지의 수단으로 야만적 성폭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 (1984. 9. 4. ~ 85. 12.)

이를 알게 된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10여개 여성단체들은 곧바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1984년 11월 21일에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11월 23일 기자회견과 성명서, 결의문 등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여학생들을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추행을 한 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항의하며 이 사건을 ‘여성에 대한 극단적 형태의 인권탄압이며 공권력에 의한 야만적인 폭행사건’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진상조사위원회의 임원들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지명 수배했고 여성단체는 지명수배금지, 공개사과, 국회의 진상조사단 파견, 폭행경찰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사건 당사자들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협의회는 12월 5일 폭력 경찰관들을 법원에 고발하고 또 다시 5개 항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여 전국적인 규탄대회와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이후 협의회 활동은 의욕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피해 당사자들이 경찰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 투쟁의식을 상실하여 이 싸움은 곧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말았다. 이에 대책위도 1985년 3.8 여성대회에서 성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이용’ 된 사실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공권력의 횡포를 규탄하고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은 한국여성의전화가 창립이후 처음 대응하게 된 성폭력 사건이며, 여성단체가 처음으로 연대하여 대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야만적인 성폭력사건이며 여성의 극단적 형태의 인권탄압이라는 점에서 여성의전화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연대망을 형성, 정치투쟁을 벌인 첫 사례였다. 여성단체들은 비록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사법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을 사회에 널리 홍보하였다. 또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성폭력을 이용하는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인 정치에 대항하여 민주화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여성운동은 곧 민족민주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당시 민주화투쟁을 탄압하는 수단으로서 성폭력이 개념화되면서 탄압의 수단으로 성을 도구화하는 것만을 비난했지 탄압의 수단으로 성이 사용되게 된 배경-가부장제의 성 모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했다. ‘성적 탄압’의 배경이 되는 정조 관념, 성의 이중 구조, 군대 문화의 반(反)여성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제도화된 사회적 모순으로 파악하는 성별 정치학의 시각은 부재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40. 경찰관에게 강간당한 임신부 자살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서영주(가명) - 임산부
- 加害者 : 김윤구(가명) - 그군 경찰서 경장

2) 사건내용

피해자 서영주씨는 당시 임신 7개월의 몸으로 1987년 8월 전남 그군 경찰서 포두 지서 출장소의 경장으로 파견된 김윤구에게 강간을 당했다.

수치심과 고통에 못이긴 서씨는 출산 후 수면제를 먹고 바다에 뛰어드는 등 자살 기도를 했으나 실패하고 눈물과 분노의 나날을 보냈다. 아내로부터 그 사건을 전해들은 남편은 김윤구 경장에게 피해를 당한 주민들과 함께 고흥경찰서장, 순천지청장 앞으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김경장을 비호하며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고 이 사건을 간통 사건으로 몰고 혀소문을 퍼트려 이들 부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다. 고소가 기각되자 피해자 서씨는 88년 6월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1989. 1. 16. ~ 4. 4.)

1989년 1월 16일 남편 장씨는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한 아내의 명예회복과 피해자 처벌을 도와달라고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를 찾았다. 참담한 일을 당한 남편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무해야 함에도 경관이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더구나 이런 강간범을 오히려 옹호하며 시민의 호소를 외면하는 경찰과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검찰관의 작태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더 이상 공권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씨의 남편 장씨는 마침내 인권단체를 방문, 도움을 요청하고, 끝까지 불의를 밝혀내기 위한 험난한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남편 장씨는 89년 1월 16일에 상경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대구 강간 사건의 피해자 그씨와 함께 이틀간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긴 싸움을 시작했다.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연합의 단체들은 이들을 방문하여 진상을 확인하고 지역여성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대책활동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강간 경찰관의 구속수사 및 처벌을 위해 남편과 그 가족들이 벌이는 농성이 장기화 되는 동안 마침내 광주,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한 11개 지역의 인권단체들이 1989년 1월 30일 ‘가정파괴범 김윤구(가명)순경 강간사건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공권력을 이용한 여성폭력과의 싸움을 선언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가해자 처벌은 물론 여성인권유린을 묵인, 조장하는 현 정권의 비도덕성을 규탄하며 기자회견(2.1), 규탄대회(2.28)를 갖고 검찰의 공정수사와 가

해자의 구속을 촉구했다. 공대위와 가족들은 광주전남여성회 사무실에서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철야농성을 벌였다. 3월 28일에는 순천 YMCA와 순천대학생과 연합하여 순천지검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남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인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가해 경찰관은 면직(3. 31)되고 끝내 구속되었다(4.4).

4) 성과와 의미

1987년 8월부터 1989년 4월까지 지속된 고흥군 임신부 강간 사건은 공권력의 비도덕성과 폭력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사건에서 진실을 은폐하는 검찰의 행태를 주시하며 이를 ‘억압적, 권위주의적 군사통치문화 그 자체요, 군사독재정권의 기본 속성’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여성문제가 사회 구조적 원인에서 출발하며 정치적 문제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간통죄로 몰리고 고소는 기각되었다. 이 결과 앞에서 피해자의 자살은 여성에게 불리한 남성중심적 성문화에 대한 항거인 동시에 절망의 표현이기도 했다. 남편 장씨는 주위의 편견에 굽하지 않고 부인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투쟁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이 당하는 고통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성폭력을 ‘가정파괴’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 경종을 울렸다.

41. 경찰에 의한 다방 종업원 성폭력 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권영실(가명) - 29세, 다방종업원
- 가해자 : 경찰관 2명

2) 사건내용

1988년 12월 5일 다방 여종업원 권영실씨가 경찰서에 끌려가 윤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권씨 사건은 대구의 한 파출소 경찰관 2명이 밤 10시 50분경 귀가길의 다방 종업원 권씨(29세)를 파출소로 끌고 가 모욕과 협박을 한 후 파출소 내 취사장에서 윤간한 사건이었다. 처음 수치심과 공포감에 떨던 권씨는 강간사실을 안 가족들이 두 명의 경찰관들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오히려 협박을 해오는 오만한 경관들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되고 두 경찰관을 형사 고발하게

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1988. 12. 5. ~ 1992. 2.)

권씨는 진실을 밝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대구여성회에 상담과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사건을 접수한 대구여성회는 객관적인 진상파악을 위해 다각적인 조사 작업을 거쳐 경찰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권씨의 진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12월 30일에는 대구 시내 제반 민주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결성 '경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규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활동을 펴게 된다.

89년 1월에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가세, 공동대처를 결의하고 나섬으로써 권씨 사건은 조직적인 여성들의 운동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성들의 대응이 만만치 않게 되자 경찰은 권씨를 무고죄로 고발, 검찰은 권씨를 무고죄로 구속하게 된다. 공대위는 이에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동시에 권씨 구속의 부당성과 편파수사에 항의하는 가두시위와 무죄석방 탄원운동을 적극 벌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복잡한 형국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권씨는 여성들의 지원활동에 힘입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게 되었지만, 정작 핵심인 강간 경찰관들에 대한 권씨의 고소, 고발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91년 3월 공대위는 두 경찰관의 구속을 요구하는 여론 운동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8월에는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92년 2월 12일 두 경찰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고 말았다.

1992년 2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구 그씨 윤간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인식의 한계와 공권력의 횡포를 규탄했다. 공대위는 3년간의 투쟁과정에서 절감했던 경찰의 안이한 태도와 현행 법의 한계로 인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를 계기로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관련법 개정이나 수사관행의 개혁 같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쟁으로 계속해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4) 성과와 의미

1988년 말부터 1992년 2월까지 지속된 권씨 사건은 여성운동가들에게 성폭력

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 여성운동단체는 이 사건이 공권력의 비도덕성과 폭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여성의 폭행하였고 검찰과 경찰이 가해자인 경찰을 두둔하였으며 사건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점을 비판하였다.

이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유포된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성을 매개로 한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한 계기가 되었다. 피해 여성의 고통, 여성의 이분화와 성의 이중규범이 전면에 드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비난 논리가 비판받게 된 것이다. 권씨 사건의 경우 이혼 여성과 소위 '직업여성'(이 경우 다방종업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재판과정에 불리하게 작용, 오히려 그녀가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이는 이미 권씨 스스로도 예상하고 있었다. 자신의 직업이 줄 수 있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혼자 고통을 감내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사법부의 여성차별적인 성인식을 반영한 사건으로서 성폭력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대위는 1991년부터 가해 경찰 구속과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피해자가 '운동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한 것도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권씨는 대구지역의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여성의 수치심을 딛고 일어난 사건으로 큰 의미가 있다. 권씨는 1989년 10월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했다. 권씨는 "성범죄의 피해자는 부끄러움으로 항상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짐승 같은 두 인간에게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에도 용기있게 얼굴을 보이겠습니다"고 말함으로써 성폭력의 피해자를 주눅들게 하는 사회적 강간, 제2의 강간에 항의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의한 역고소

42. 강간범의 혀를 깨물어 과잉방어로 고소당한 박씨 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박은옥(가명) - 주부
- 가해자 : 청년 2명

2) 사건내용

식당을 경영하는 박씨가 1988년 2월 26일 밤 1시 경 귀가 길에 청년 2인에 의해 골목길로 끌려가 강간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자 강제로 키스하려는 범인의 혀를 깨물어 위기상황을 모면했다. 그러나 화를 당한 범인들이 오히려 박씨를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박씨도 범인들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다. 박씨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고 ‘과잉방어’로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1988. 9. 10 ~ 1989. 1. 11.)

이 사건은 개인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보도를 보고 한국여성의전화(이하 본 회)가 피해여성의 법적 투쟁을 지원하게 된 사건이었다. 본 회는 88년 9월 10일 “폭행범 혀 깨문 주부에 1년 구형(중앙일보)”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접하게 되고 곧 이의 부당성을 인식,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본 회는 9월 20일 ‘강간에 대한 정당방위도 죄인가?’라는 주제를 내걸고 성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범인의 혀를 깨문 박씨의 행위가 여성의 방어권에 해당됨을 주장하고 무죄 판결을 위해 사회여론을 결집시킨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9월 21일, 선고공판에서 사법부는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를 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범인에게는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미수를 적용, 그 형량이 훨씬 가벼워졌다. 판결에 접한 본 회는 즉시 기자회견을 갖고 ‘강간범을 옹호하는 ○ 지원 유죄 판결에 항의하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무죄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 후 본 회는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위하여 박씨의 항소심 변론을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동시에 박씨의 무죄판결을 위한 범시민 가두서명운동도 전개했다.

1989년 1월 20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여성계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본 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씨는 여성의 성과 생명보다 남성의 혀를 더 중시하는 인권유린의 현실에 대항하여 수치심을 딛고 고통스런 투쟁을 벌여왔다며 박씨의 용감한 행위를 치하하고 이번 승소 판례는 성폭력 추방을 위한 한 계기를 열었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4) 성과와 의미

박씨 사건은 1988년 9월 10일 한밤 중 귀가 길에 평범한 주부가 달려드는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정당’ 한 자기방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비록 여성운동단체의 투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내긴 했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성폭력 가해자측의 변호사가 박씨가 사건 당일 먹은 술의 양, 동서와의 불화 등을 계속 거론하면서 그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웠다. 폭행 당할 때 가해자의 손이 음부에 들어온 것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구타당한 것 등 행위의 순서가 왜 진술 때마다 바뀌냐고 검사가 호통을 치는 등 ‘피해자가 죄인으로 취급되는’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정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판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와 검사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던 성폭력 피해자 박씨는 재판장께 드리는 글에서 ‘차라리 제가 그 날 밤에 그 놈들에게 당하고 죽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진 않았을 텐데…’ 라며 괴로워하였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우리 동네에서 강간 사건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보호받을 정조는 무엇이고 보호받지 못할 정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여성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과 여성의 인권보다 남성의 혀를 더 중시하는 사법부의 편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피해여성의 음주 상태, 식당경영 사실,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닌 점 등이 성폭력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은 여성의 자위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변호인단은 12월 14일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

결은 이 나라 여성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영화화되면서(김유진 감독의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본 회는 시나리오 작성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와 여성운동가 간의 신뢰 관계를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박씨는 항소 공판일 바로 전 날 걱정으로 한숨도 못 자면서도 “힘써 주신 여성의전화 식구들을 집으로 모셔와 우리가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밤중에 보쌈 김치를 담그고 떡쌀을 담가” 놓을 정도로 여성운동단체에 애정을 갖게 되었다. 박씨는 “건강이 회복되면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돋고 싶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대는 성폭력운동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기존의 성폭력 담론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변호인단과 여성운동단체들은 박씨의 자기 방어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모순에 빠진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이 바로 정조 이데올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운동단체는 유교적 정절의 개념에 입각하여 사법부에 선처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성운동단체의 논리는 보수적인 사법부와 대중을 상대로 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43. 강간 고소 후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 당한 사건

1) 인적 사항

- 피해자 : 안정애(가명) - 20세
- 가해자 : 김우현(가명) - 43세, 고시원장

2) 사건내용

안양여성의전화(이하 본회)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로 “강간을 당했으나 도리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상담이 올라왔다. 본 회는 당당하게 대처하라는 답변을 해 주었으나 곧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듯하다”며 상담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본 회는 면접을 유도하여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다.

피해자 안정애씨는 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3월 고시원에 들어갔다. 안씨는 그곳에서 시험 준비 중에 신체검사를 받고는 불안한 마음에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고시원 총무에게 술을 한잔 사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총무가 원장에게 사달라고 하자고 하여 원장과 함께 동석하여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에 갔고 그곳에서 맥주를 몇 잔 더 마셨다. 그런데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안씨는 술이 취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원장이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는 것을 피하여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중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원장이 총무가 다른 곳에서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갔다.

술이 취해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소파가 있는 커피숍인 듯 했고 억지로 눕히려 하여 저항하였으나 뺨을 한 대 맞은 기억이 나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바지와 팬티가 벗겨졌고 원장이 배위에 올라 앉아 있었다. 안씨는 엉겁결에 옷을 챙겨 입고 고시원으로 뛰어와 자고 일어나 보니 신발도 한 짹이 없고 쿠리닝 바지는 뒤집어 입은 채였다. 자신이 술에 취해서 강간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고 싶었다. 아침 9시경 원장이 전화를 걸었더니 원장은 “너무 상처받지 마라” “그럴수도 있다”고 하며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안씨는 사과만 받으면 마음속으로 접으려 생각하고 사과를 받으려 했지만 원장은 총무와 함께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나서 고민 끝에 형부와 상의하여 고소를 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1. 7. ~ 2003. 10.)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이 취한 상태였고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술이 덜 취해 당일의 정황을 모두 기억하는 가해자의 “좋아서 했다”는 진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형사기동대에 사건정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안양여성의전화(이하 본회)는 안씨와 함께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 가능한 기억하여 상세히 기록하는 한편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조사에서 어떻게 주장 할 것인지와 검찰 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였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반성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안씨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은 2차 출두를 요구하였고 본 회는 안씨와 동행하였다.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본 회는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였다. 3차까지 재판이 진행되었고 본 회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방청 등을 지원하였으나 안씨는 1심에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실형 6월에 집행유

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03년 9월 기각되었다.

4) 성과와 의미

피해자와 본 회는 2001년부터 꼬박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너무나 두꺼운 편견의 벽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힘겨운 법적 투쟁 과정에서 다행히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끗꿋하게 잘 이겨내었다.

대개의 경우 피해자의 힘겨운 노력이 아니라면 성폭력 사건은 묻힐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미약하고,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중심의 수사과정과 관련 법개정이 시급하다.

44. 성폭력 가해교수들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김혜순, 이두옥(사건 당시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
 - 加害者 : 김민석(가명) K1대 교수
이성호(가명) K2대 교수

2) 사건내용

이 사건은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던 대구여성의전화(이하 본 회)가 가해교수를 실명으로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먼저 김민석 교수 사건은 2000년 5월 12일 김교수가 피해자(조교)를 경주로 유인하여 억지로 독한 고량주를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인사불성의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가 강간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고소로 김교수는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2001년 3월 13일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성호 교수 사건은 2000년 7월 이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제자)를 강제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다. 위 사건

으로 이교수는 9월 27일에 구속 기록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풀려난 후 대학에서 해임되었다.

위의 두 사건을 접한 본 회는 피해자들을 면담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지역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K2대 이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수사기관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각 사건 내용을 본 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재하고, 그 소식지를 회원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각 지부 및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이에 대해 이교수와 김교수는 본 회가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실명으로 범행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재, 배포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8월 24일 본 회의 전 공동대표 2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1.9 ~ 현재)

이어서 이를 후 이교수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본 회의 전 공동대표 2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본 회 공동대표와 부장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본 회는 증거자료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 교수 및 일반시민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본 회는 명예훼손건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법원 앞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피켓팅을 하였다

처음에 경찰서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2002년 1월 전 공동대표를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였다. 이에 대책위가 정식재판을 요구하여 정식재판이 열렸으나 1심 재판에서 역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폭력 역고소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8일 성폭력加해자 역고소 반대 1만 명 서명 운동이 시작되어 2003년 2월까지 계속 진행되었으며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대책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3년 4월 11일 항소심에서도 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대책위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성 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관단체인 ‘대구 특

위'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3년 8월 29일에 열린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 재판 분석토론회'에서는 역고소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11월부터는 매일 시민사회단체에서 대법원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은 처음 발생시부터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가해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법원까지 올라간 최초의 역고소 사건으로 그 판결의 결과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형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한다. 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의 본 회에 대한 유죄 판결은 법에 근거한 여성폭력추방을 위한 여성인권활동이 '공익'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즉 여성의 인권은 공익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남성의 명예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는 교수로서 우리 사회의 가장 상위에 있는 공인이다. 그 피해자는 그 공인의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그의 피해는 공익의 침해가 된다. 공인의 행동은 공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 자신의 권리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

본 회는 피해자를 돋고, 다른 피해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며 잘못하고 숨어있는 다른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사이버상에 그 이름을 적시한 것이다. 본 회의 활동으로 두 교수는 그 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되었다. 그러나 두 교수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기에 본 회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본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이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성폭력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과 명예가 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법부의 남성중심적 편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최근 성폭력피해자나 여성단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소록 …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5개 지부와 1개 지회와 함께 활동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본부

02)2269-2962 02)2269-1823(fax)
상담전화 : 없음
www.hotline.or.kr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100-391)

서울

02)2272-2161 02)2256-2190(fax)
02)2263-6464/2263-6465
hotline.jinbo.net
서울 중구 신당 1동 236-509 을지빌딩 5층 (100-451)

서울강서양천

02)2605-8455 02)2605-8222(fax)
02)2605-8466
www.womengo.org
서울 강서구 화곡 7동 1075-25 인폼빌딩 5층 (157-925)

강릉

033)643-1985 033)642-1980(fax)
033)643-1982
www.gwhotline.or.kr
강원도 강릉시 교 1동 935-1 CBS 영동방송 1층 (210-923)

강화

032)934-1903 032)934-1902(fax)
032)934-1900,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87번지 (417-807)

광명

02)2614-7370 02)2614-7673(fax)
02)2681-0238/2060-0245
www.kmhotline.or.kr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240번지 주공마상가 203호 (423-033)

광주

062)363-7739, 0485 062)363-0486(fax)
062)364-1366/363-0487 062)363-0442, 3(일반상담)
www.kjhotline.org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4-8번지 1층(502-834)

군산

063)445-2285, 6 063)445-2286(fax)
063)445-2285
전북 군산시 월명동 18-14 구월명동사무소 2층 (573-060)

김해
055)329-6450 055)329-6452(fax)
055)329-6451/329-6453
경남 김해시 봉황동 17-6 3층 (621-040)

김포
031)986-0136 031)997-0136(fax)
031)989-0136
www.kpwhl.or.kr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0-5 김포뉴스 4층 (415-801)

대구
053)657-8086 053)627-1711(fax)
053)657-8082, 3
www.dwhotline.or.kr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3동 2282-41 2층(705-030)

목포
061)283-4551 061)283-4551(fax)
061)283-4552 (가폭), 061)279-1366, 283-4510 (성폭)
www.mokpowomen.or.kr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94 - 12번지 2층 (530-826)

부산
051)817-4321, 2 051)817-4320(fax)
051)817-6464/817-6474
www.pwhl.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653-1번지(614-865)

부천
032)328-9713 032)328-9712(fax)
032)328-9711
bwhotline.womanv.net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4-4 현해탑프라자706호(420-852)

성남
031)751-2050 031)751-2051(fax)
031)751-6677/751-1120
www.withwoman.or.kr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1288-25 오현빌딩 6층 (463-805)

수원
031)232-7780 031)238-7780(fax)
031)232-6888/224-6888, 239-6889 (여성상담)
suwonhotline.or.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0-1 경희빌딩3층 (442-835)

시흥
031)312-4700 031)312-7798(fax)
031)312-9494
경기도 시흥시 정왕1동 1213-18호 송호빌딩 3층(정왕1동 사무소옆)

안양
031)442-5385, 8159, 441-4171 031)441-4386(fax)
031)442-4395/442-4394

awhl.w21.net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59번지 정화빌딩 6층 (431-821)

영광
061)353-4994 061)353-4990(fax)
061)352-1321, 2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109-2 (513-807)

울산
052)244-1555 052)245-6713(fax)
052)211-1205
www.uwhl.or.kr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0번지 3층 (681-210)

의산
063)857-8163 063)857-8164(fax)
063)858-9191
전북 익산시 창인동 1가 17-1 조현일내과 4층 (570-991)

인천
032)527-0090 032)527-0093(fax)
032)529-2545/504-3405
www.hotline21.or.kr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17-40 동익빌딩 4층 (403-826)

전주
063)287-7324 063)286-7324(fax)
063)283-9855/282-1366
jjhotline.org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64-2 3층 (560-023)

진해
055)546-1400 055)546-1406(fax)
055)546-0036
경남 진해시 풍호동 750-19번지 2층 (645-320)

창원
055)266-3722, 3822 055)283-3722(fax)
055)283-3722/264-8322
www.chwhl.or.kr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5 725호 (641-080)

천안
041)561-0303 041)561-0324(fax)
041)561-0303, 0355
myhome.naver.com/hotline0303
충남 천안시 신부동 56-30 (330-160)

청주
043)252-0966 ~ 7 043)255-0966(fax)
043)252-0968, 9
cjhotline.or.kr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22-15번지(360-050)